

##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

의안  
번호 /353

제출년월일 : 2009년 6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폐지이유

- 「토지구획정리 사업법」에 의거 시행되었던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00. 9. 23일 시작하여 2004. 7. 22일 까지 완료됨에 따라
- 「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「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 하고자 함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: 붙임

- 첨부 1. 의안전문 1부  
2. 관련법령 1부  
3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

##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

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관계법령]

### 도시개발법

**제10조 (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)**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1. 도시개발구역이 지정·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
2.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(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)의 공고일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·지구·구역 등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·지구·구역 등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.

## 입 법 예 고

제천시 공고 제 2009 - 753

「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
2009. 5 . 22

제 천 시 장

1. 조 래 명 :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
2. 폐지사유 :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(2004.7.22)
3. 폐지조례안 : 붙임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 월 10 일  
까지 제천시장 (참조:지역개발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164 , FAX 641 -5179      담당자 : 강원진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지방행정주 사보	개발지원팀장	지역개발과장			
강원진	조동현	06/10 함대회			

## 폐지조례안 입법예고결과보고서

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 
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
2. 공고번호 : 제천시 공고 제2009-753
3. 공고기간 : 2009.5.22 ~ 6.10
4. 공고매체 : 제천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별도불임
6. 공고결과
  - 조회수 : 45명
  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임 : 공고안 1부 (별지) 끝.